

대검찰청 2024년도 제9차 공무원(검찰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검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검찰총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검찰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검찰주사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 공공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품질진단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데이터기반행정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업무 ○ 부서 내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미적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10.31.)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선택 응시>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응시 자격 요건	경력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위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 응용·융합 분야 등 - 관련학위 :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10.31.예정)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및 국·공립·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 제외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3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5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4.10.10.)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종류별·건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 차등 우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자격증] (종류별·건별 차등 우대)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타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DAP)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 제외(박사학위 응시자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전형, 8명 이상인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7명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9.30.(월) ~ 10.10.(목)	'24.10.4.(금) ~ 10.10.(목)	'24.10.25.(금)	'24.10.31.(목)	'24.11.12.(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검찰청 홈페이지 알림(고시·공고)란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10. 4.(금) ~ 10. 10.(목)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2024. 10. 15.(화)까지 응시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문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채용담당 (공공데이터품질관리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3480-2037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쿠팡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1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필요시 별지서식 제9호 활용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직무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1. 13. ~ 12. 12.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76,868	38,729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02-3480-2037, 채용 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6.29.))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따른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다더라도 개정된 사항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검찰주사 (일반임기제)	1명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 공공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품질진단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데이터기반행정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업무 ○ 부서 내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 능력,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획관리능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 및 수집, 가공, 분석, 활용에 대한 이해 ○ 데이터 품질관리 등에 대한 이해 ○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및 표준분석모델 구축에 대한 이해 ○ 딥러닝, LLM 등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 정보화 사업 및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이해 		
응시 자격요건	경 력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종류별·건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차등우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응시 자격요건	학 위	③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차등우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자격요건	학 위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차등우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 자격요건	학 위	-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 응용·융합 분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차등우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위 :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응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종류별·건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종류별·건별차등우대)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작성 후 하단 서명란 자필서명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하단의 날짜, 성명, 서명은 자필 기재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 하단의 날짜, 성명, 서명은 자필 기재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 하단의 날짜, 성명, 서명은 자필 기재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9.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 예정) 증명서 사본 1부 : 필수서류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응시자격요건)와 동일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구 분	내 용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 취득자의 경우 석사학위로 응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박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함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업체(기관)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주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 분장내역, 경력증명서(별지서식 제8호)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 등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12.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3. 직무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성명	채용분야
(공란)		검찰주사 (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연번	목 록	제출여부
1	[별지2]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포함(필수)	
2	[별지3] 이력서 1부(필수)	
3	[별지4] 자기소개서 1부(필수)	
4	[별지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5	[별지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6	[별지7]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필수)	
7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8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필수)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8]	
10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별지9]	
11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12	직무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	
13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회에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2024. . .		
성명 : (서명)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하		

- ※ 작성 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표시
- ※ 위 연번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 ※ 반드시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

응시원서 (원본)

검찰총장 귀하

본인은 대검찰청 2024년도 제9차 공무원(검찰주사)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검찰주사(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응시자격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검찰주사(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응시자격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응시표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 면접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이 력 서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검찰주사(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검찰주사 (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응시자격요건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 경력증명서에도 상세표기되어야 함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전산학		'00.00.00	전산학 석사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 경력증명서에도 상세표기되어야 함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타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DAP)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박사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 제외(박사학위 응시자는 우대요건에서 제외)

-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 취득자의 경우 석사학위로 응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박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함

<별지서식 제4호>

자기소개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검찰주사 (일반임기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24. . . 작 성 자 :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1~3매 내외로 작성,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2024. . . 작 성 자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검찰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검찰총장 귀하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가.
- 1) 가) (1)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①담당업무	②근무형태 (주근무시간)	③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검찰 주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상근 (주 40시간)	
제외 기간	제외기간			제외사유			
	(예시) '00.00.00. ~ '00.00.00.			(예시) 육아휴직 등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④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증명기관명 :							⑤ 확인자
주소 :							소속
전화번호 :							직위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인)
대표자 :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 근무시간 기재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④ 발급자 : 발급 업무 담당자 직접 기재 (발급신청자×) ⑤ 확인자 : 인사 부서 담당자 직접 기재 (발급자의 직속상급자 혹은 소속부서 팀장 및 과장 등)							